휴먼케어영상콘텐츠대학원 학칙시행내규(신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신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의거 휴먼케어영상콘텐츠대학원(이하 “대학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통합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과별 전공 및 입학전형

제2조 (학과별 전공)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전공을 둔다.
상담케어전공, AI글로벌비즈니스전공, 글로벌신학전공, 뷰티케어전공, 영상콘텐츠전공

제3조 (제출서류)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백분율 환산점수 기재)
4. 위 명시된 지원구비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는 대학원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 (전형방법) 입학전형은 학부성적 및 면접(구두)고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입학등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 등록자는 합격을 무효로 처리한다.

제6조 (입학취소) 입학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

제7조 (합격사정) 합격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제8조 (등록) ①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입학금과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제적 처리한다.

제9조 (등록반환)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제10조 (휴학) ①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석사학위과정은 2회, 박사학위과정은 3회에 한한다. 단, 군복무를 위한 입영 및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신입생은 병역 또는 질병 및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학년도 1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휴학 구비서류) 일반휴학을 제외한 특별히 휴학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①특별한 사유일 경우 : 휴학사유서

②질병·사고일 경우 : 병원 진단서

③병역의무 : 입대(복무)확인서

④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 임신과 출산 및 육아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제12조 (휴학명령) 학기 개강 후 5주 이내 등록을 못할 경우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인정) 등록을 필한 학생이 수업일수 1/3 이전에 휴학할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대체 인정하며, 중간고사 이후의 휴학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및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휴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복학) ①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학원이나, 휴학연기원의 제출이 없으면 학업 계속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학점·수료

제15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교육과정은 전공단위로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②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장이 정하는 전공과정 및 과목은 2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과정의 구분) 교과목은 기초공통, 전공, 전공선택, 선수 과목으로 구분한다.

제17조 (수료 학점) 석사학위과정에는 2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단, 글로벌신학전공은 60학점이상 취득 하여야 한다.)*

제18조 (수강신청 및 정정) ①학생은 등록을 필한 후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각 전공 수강신청 학점은 선수과목을 제외하고 9학점을 넘을 수 없다. 단, 글로벌신학전공은 16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다.

③ 수강신청 정정은 소정기일 내에만 가능하다.

④ 규정 외에 초과하여 신청한 과목의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제19조 (성적정정) 확정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단, 과오처리의 경

우에는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정 보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재이수) ① C+이하과목은 재이수를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재이수 학점은 기 취득한 성적과 재이수 성적 중 높은 성적을 인정하여 성적표에 기재하고 평균평점 계산에 반영한다.

제21조 (휴학자의 성적인정)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한 후 군 입대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5장 선수과목

제22조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학부 전공과 비동일계 전공과정에 입학한 자는 수료학점 외에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선수과목 이수학점) ①이수대상자는 전공학과의 기초가 되는 하위과정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성적 표시는 P(합격), NP(불합격)으로 한다.
②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6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글로벌신학전공의 경우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제24조 (선수과목 신청) 선수과목 신청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

제25조 (선수과목 결정) 선수과목의 결정은 해당 전공 교수회의에서 하며 원장은 이수해야 할 과목을 매 학기 초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자격시험

제26조 (총칙) 졸업을 위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시행한다.

제267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 등록하고 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로 한다.

제28조 (응시절차) 응시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 원서와 수험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30조 (시험시간) 종합시험은 각 과목마다 6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시험과목) 종합시험의 과목은 각 전공에서 지정하는 전공 3개 과목으로 한다.

제32조 (출제범위)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시험하는 범위로 한다.

제33조 (합격인정) 전공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34조 (재응시)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 응시 할 수 있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

제35조 (학위청구논문 절차) ①학위청구논문 절차는 다음과 같이 거쳐야 한다.

1)논문지도교수 선정
2)논문연구계획서·연구윤리서약서 제출
3)논문발표 및 심사
4)논문지도보고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5)논문 제출
6)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②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를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 등록 두 번째 학기부터 논문대체신청서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대체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석사학위논문 제출자에게 요구되는 졸업 이수 학점 외에 재학 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6학점 이상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6조 (논문지도교수 선정) 논문지도교수는 석사 2학기차에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희망지도교수에게 확인을 받아 교무과에 '학위논문지도교수 신청서' 제출 후 연구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한다.

제37조 (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해당학과 해당전공분야 교원으로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 (논문지도교수 변경)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휴직, 안식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논문지도교수의 지도 학생수) 논문지도 학생수는 전공별로 5명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논문지도 기간) 논문지도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 논문지도기간은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기와 학위청구 논문발표 학기를 포함한다.

제41조(논문지도 보고서)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 완료시 대학원장에게 논문지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논문연구계획서는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이 그 내용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시기는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으로 지도교수 및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논문연구계획서 발표)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연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 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위원(논문연구계획서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과 동일인으로 함) 참석 하에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위원장은 발표내용을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3.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논문제목 변경)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논문지도 진행 중에 논문제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원을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논문심사위원) ①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논문심사 경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위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논문심사위원 임무)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논문발표 요지, 논문내용, 참고 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이 타인에 의해서 발표된 적이 있는지, 발표된 부분이 논문에 삽입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47조 (논문발표 신청) 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논문발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논문발표 시기 및 장소) 논문발표 시기와 일정 및 장소는 교수회의를 거쳐 정한 후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논문발표) ①논문발표는 논문심사위원, 학과교수 및 전공분야 연구자들 앞에서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발표자는 발표요지(석사학위과정 : A4용지 10매 내외, 박사학위과정 : A4용지 20매 내외)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50조 (논문심사)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예비심사, 학위청구논문발표(구술심사 포함)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 (예비심사) ①논문발표자는 예비심사 1주일 전에 심사용 논문 3권을 지도교수에게 승인받아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가 끝나면 각 논문심사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예비심사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 중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교수회를 거쳐 정한 후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 (학위청구논문발표) ①논문발표자는 학위청구논문발표 전에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심사용 논문 3부 및 국문초록을 첨부하여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발표가 끝나면 각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발표 결과보고서와 논문지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발표는 반드시 구술심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학위청구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학위청구논문발표 시기는 매년 6월 초순과 12월 초순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교수회의를 거쳐 정한 후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논문심사 평가) 논문심사는 구술심사를 포함하여 A,B,C,D 등급으로 평가하며, 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 2인 이상의 평가로 결정한다.

제54조 (완성논문 제출) 논문발표자는 논문심사에 합격하면 정한 기간 내에 완성논문 1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심사한다.

제55조 (논문 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해당학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심사 받을 수 있다.

제56조 (논문작성 원칙)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문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단, 외국어의 기준은 영어로 한다.

제57조 (논문양식 및 체계) 논문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그 양식 및 체계는 본 대학원 학위논문규정에 따른다.

제58조(논문 제출) 완성된 학위논문 석사 4권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논문 전권을 논문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학 위 수 여

제59조 (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① 학칙 제22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료 및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②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B°) 이상인 자

③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학기 이상논문지도를 받은 자

⑤ 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석사학위논문 대체 요건 6학점을 이수하여 인정을 받은 자

제60조 (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대상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61조 (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다음과 같이 학위를 수여한다.

상담케어전공	상담학석사(M.A.)
AI글로벌비지니스전공	글로벌비즈니스학석사 (M.A.)
글로벌신학전공	글로벌신학석사(M.A.)
뷰티케어전공	문화예술학석사(M.CA.)
영상콘텐츠전공	문화예술학석사(M.CA.)

제 9장 연구윤리 준수

제62조(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연구부정행위 조사)

① 연구진실성에 저해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대학원장에게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학위청구논문연구윤리조사위원회의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연구윤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위원 중 3인과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대학원위원 중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⑤ 학위청구논문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학원장은 제 72조 5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학위청구논문 작성자 및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 사항을 결정한다.

⑧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학위청구논문 연구부정행위자 등의 징계처분)

① 연구부정행위가 판정된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자가 재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징계하고, 수료자인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판정된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자의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지도교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논문지도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논문지도 자격은 예외로 인정한다.

③ 연구부정행위가 판정된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자가 이미 학위를 받은 자의 경우, 대학원 학칙에 따라 총장은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0장 학위연계

제65조(학위연계) 글로벌신학전공 졸업자 중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본교 신학대학원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편입 자격은 글로벌신학전공 졸업자 중 신대원 1,2학년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그 외 선택과목을 합하여 6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1장 보 칙

제66조 (준용사항) 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대학원통합학칙 및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 (내규 등) 세칙이 위임한 사항이나 대학원 특성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에서 별도의 내규 및 지침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본 학칙 시행내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